

비용기보증금이 달라집니다

20년 넘게 인상되지 않았던 비용기보증금이 2017년 1월 1일부터 물가수준과 유리병 제조원가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재조정됩니다.

구분	보증금		비고
	현행	변경*	
190ml미만	20원	70원	소형 마니아처 등
190ml 이상~400ml미만	40원	100원	소주, 맥주(소형), 상량양조 등
400ml 이상~1,000ml미만	50원	130원	맥주(중대형)
1,000ml 이상	100원~300원	350원	대형 정종 등

*변경된 비용기보증금은 2017.1.1 이후 생산 제품부터 적용됩니다.

비용기 재사용 표시가 달라집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일시적으로 보증금 인상 전/후의 제품이 함께 유통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이라도 생산시기에 따라 구매 비용(제품가격+보증금)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재사용 표시와 환불금액을 확인하고 구매 및 반환해야 합니다.



소매점은 빈병을 꼭 받아주세요!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언제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특정 요일(날짜)이나 시간을 지정하여 반환받거나 보증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육안으로 파손이 확인되거나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할 경우, 초과된 빈병에 대해서는 반환 및 보증금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소매점에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량과 관계없이 환불해야 함)

빈병을 도매상 등에 반환할 경우, 제조사(제품별) 및 보증금(인상 전과 후)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하며, 파손 및 분실을 예방해야 합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제품의 보증금이 변경되므로 같은 제품이라도 보증금을 확인하고 판매·환불 해주어야 합니다.
•라벨 등이 훼손되어 재사용표시 또는 보증금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상 전 보증금 지급

주점,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제품 가격에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음식점에서 마시고 남은 빈병은 해당 사업자의 소유로 가져가시면 안되고, 일반 소매점에 반환하거나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는 빈병을 꼭 반환하세요!

빈병이 파손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쓰고 반환해야 합니다.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소매점에 한해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반환 및 환불 가능합니다.

빈병이 파손되거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소량이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파손 등으로 재사용이 어려울 경우 환불 불가)

빈병 관리의 이렇게!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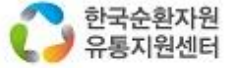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의거,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안정적인 수요 및 공급을 통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며,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13년 12월에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2015년 1월 자원 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빈용기보증금 관련 업무도 전담)

빈용기보증금 제도란?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어디로 신고해?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
1522-0082
www.kora.or.kr



빈용기보증금 신고보상제



신고전화 1522-0082

보증금이 포함된 빈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을 **관할 지자체나 빈용기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에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해당 소매점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단, 신고건수는 1인당 연간 10건 이하로 규제)

빈병 매점매석 금지

빈용기보증금 인상에 따른 차익을 목적으로 빈병을 매점매석(사재기)할 경우, **빈용기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2016.11.1.시행)**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라벨 위조는 사기죄에 해당됨)



* KORA에서는 매점매석 행위 등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빈용기보증금제도 주요 개선사항

빈용기보증금액이 인상됩니다



바뀐 재사용표시를 확인하세요

